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93
----------	------

2021년 3월 3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12월 22일, 양민규 의원

2. 회부일자 : 2021년 1월 21일

3. 상정일자

○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1년 3월 3일 상정·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양민규 의원)

1. 제안이유

○ 여성의 경우 매달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여성할인 감면사유를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수영장 사용료 감면기준에 포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영장 사용료 감면사유에 여성할인제도를 규정함(안 제9조제2호다목)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22일 양민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093호로 발의되어 2021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이 생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함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도록 규정(이하 ‘여성할인’)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여성의 경우 신체적 특성에 따라 평균 28일의 간격을 두고 5~7일¹⁾의 생리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생리적 현상으로 인하여 여성은 일정기간 수영장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의 이용료는 여성과 남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균 1달이라는 기간만을 기준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는바, 생리를 하는 여성이용자는 남성에 비해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실제이용일수 대비 높은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²⁾.

1) 나무위키(<https://namu.wiki/w/%EC%9B%94%EA%B2%BD>) ‘월경’으로 검색(2021.2.15.방문)

2) ‘생리로 못 쓴 수영장 이용료 환불받는다’, 이데일리, 2007.5.17. 기사, ‘국민 74% “여성 수영장 생리 할인 찬성”’, 동아일보, 2007.3.6. 기사, ‘수영장 생리할인 미적용 “여성들 뿔났다”’, 세종경제뉴스, 2018.8.1. 기사 등 참조.

-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 및 타시·도에서는 여성의 신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성할인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붙임] 참조).
- 따라서 이러한 여성의 불가선택적인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감면 사유에 여성할인을 규정한 동 개정조례안은 남녀간의 신체적 차이를 감안하여 실제 수영장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적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에 대한 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내 수영장 이용시 수강료의 10%범위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여성이 생리기간 중 수영장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이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달을 이용할 것을 전제로 요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에 따른 여성할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사회적 공감³⁾을 얻고 있는바, 이와 같이 여성할인을 사용자 감액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여성할인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나이를 기준으로 감면의 적

3) ‘국민 74%“여성 수영장 생리 할인 찬성”’, 동아일보.2007.3.6.기사 중 일부내용 발췌
 “~생리 기간에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생리 할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중 7명이 이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6일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여성의식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4%(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가 ‘생리 할인’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 비율은 여성 78.6%, 남성 68.6%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0.6%, 19~29세 78.4%였다. 또한 모든 가임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제공 해야 한다는 주장은 51.7%가 동의했다.~(이하 생략)”

용대상을 정하는 것은 여성의 생리가능 연령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UN 국제기준인 15~49세의 여성을 가임기 여성으로 구분⁴⁾하고 있으나, 여러 연구결과를 살펴봤을 때 연구시점 및 대상에 따라 여성의 초경 및 폐경의 평균 연령이 달리 정해지고 있는바⁵⁾, 여성의 생리연령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그러나 대상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여성할인 제도의 시행이 어려울 수 있는바, 서울시 및 타시·도의 여성할인 연령 규정을 참조하여 그 범위를 13세부터 55세로 규정한 것은 서울시 및 타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할인에 있어 사용료의 감액비율을 10%로 규정하고 있는바, 감액비율은 여성이 생리로 인하여 실제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감액되도록 비율을 정하는 것이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여성의 생리기간이 평균 5~7일임을 고려했을 때 30일 기준 대비 약 16%~23%의 기간 동안 생리 중인 여성은 수영장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수치상 추정이 가능할 것인바, 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적정한 감면율은 최대 23% 이하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서울시 및 타시·도가 여성할인에 대한 감액비율을 대부분

4) '2019년 모자보건사업안내', 보건복지부, 120쪽

5) '한국 여아 초경연령 15년간 계속 빨라져...조기초경 평균 연령 10.5세', 매일경제 2020.12.30.자 기사, 「여성청소년의 건강상담 표준서비스 제공방안」, 보건복지부 학술연구 용역사업,(2016.10.23.),14쪽, "한국 여성 청소년의 평균 초경 나이는 점점 빨라져 2015년 기준 11.7세임", '한국여성 평균 폐경연령 49세',의학신문,2013.8.12.자 기사,

10%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직속기관 수영장의 감면률은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서울시 및 타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용객들의 혼란 방지 및 시설간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2024, 2021.2.9.),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영장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0
분의 10 범위에서 감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사용료 감면) 관리책임자는 제 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별표 1의 개인연습사용료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p> <p>가.·나.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3.·4. (생 략)</p>	<p>제9조(사용료 감면)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p> <p>-----.</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u>수영장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액</u></p> <p>3.·4. (현행과 같음)</p>